

建築士法의 改善

建築物에 확보하여야 할 最低基準을 제시하는 建築法規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려 해도, 神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한도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法規로 규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良識”과 “能力”을 갖춘 者로 하여금 建築物을 만드는 일을 하게하여 法規上의 補完을 기대하게 된다.

建築士免許制度를 두어 設計・工事監理의 業務를 하게 하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設計 이후에 施工의 適正을 위하여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技術者免許制度를 둔 것도 같은 취지라 하겠다.

建築物의 質을 확보하는데는 經濟・社會的인 여건도 큰 문제이지마는, 建築士의 役割도 뜻지 않게 막중함은 부인 할 수 없다.

이와같이 막중한 役割을 담당하는 建築士의 免許를 과연 “良識”과 “能力”을 갖춘 者에게 적정하게 부여할 수 있는 制度가 되어 있는가. 建築士法 施行 10余年이 경과된 오늘날에 와서 거론하게 되는것은 늦었으나 앞날을 위하여反省해 볼 필요가 있다.

現行 建築士制度는 “良識”과 “能力”을 実務経歴 年数의 審査와 學科試験의 결과로 判定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외에 現行法制度 아래서는 다른 方法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먼저 “能力”을 判定하는 建築士法試験制度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로 1級建築士의 경우 建築設計・建築計劃・建築構造・建築施工・建築法規의 5 科目에 대하여 試験을 실시하여 각각 100점 滿点에 平均 60점 이상을 合格으로 하며, 每科目 100점을 滿点으로 하여 每 科目 40점 이상, 全科目 平均成績 60점 이상의 得点을 合格으로 하고 있다. 得点條件은 다른 考試의 例와 공통이므로 論外로 해 둔다. 문제는 그 5 科目이 어찌하여 하나같이 100점 滿点인가 하는데 있다.

設計와 工事監理를 業務로 하는 建築士의 試験에서 主力科目일 建築設計에 대하여 어찌하여 總滿点의 1/5의 評価만을 하여야 하는가. 日本의 建築士制度가 바로 그와 같은데, 그 制度를 비판없이 안일하게 납득한 것에 불과하다. 建築士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科目이며, 다른 支援科目的 綜合이기도 한 建築設計 科目에 대한 配点은 상대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今年부터 施行된 国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技術分野에도 建築構造・建築設備・建築施工의 세 가지 種目의 技術資格이 있으므로 이 技術資格試験에서 主力科目(建築士에게는 主力科目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되는것에 대하여는 建築士試験에서는 덜 評価하는것이 타당하다는理由가 뚜렷하여졌다.

둘째로 科目免除制度이다. 建築士制度 初期부터 “試験科目 중 60점 이상을 得点한 科目에 대하여는 本人의 願에 의하여 3回에 한하여 그 科目的 試験을 免除” 하였는데 도중이 規定이 削除되었다. 즉 現行制度는 1 科目이라도 科目落第가 있으면 不合格이고, 再次 応試時에도 全科目 모두 応試하여야 한다.

建築技術文化의 내용이 革新되어 어제와 오늘이 相反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科目合格制度를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불필요한 応試者の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各科目에 대하여 깊이있는 研究를 자주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또 現실적으로 各科目마다 깊이 있는 出題도 가능하고 能力의 向上에 도움이 된다.

셋째로 出題한 問題는 事後 公開할 필요가 있다. 이의 효과는 出題에 대한 研究를 더욱 強要할 수 있으며, 応試者에게는 建築修業의 方向을 제시해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問題水準이 곧 応試者の 水準을 끌어 올리고 있는 例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問題의 事後公開는 次後 試験問題의 内容을 暗示한다거나, 錯誤된 問題로 인해 物議를 惹起한다는 우려가 있다 하겠으나, 次元을 높혀 이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問題內容은 單純暗記를 요구하는 문제보다 実務의으로 필요한 応用問題 위주로 力點을 둔것이 바람직하다. 設計와 工事監理는 関係事項의 暗記로 되는 業務가 아니고 判断能力을 요구하는 業務이다. 応試者の 年令層도 벌써 그러하다. 한 예로서 建築法規는 모두 暗記할 수 없으므로 応試場에서 法令集을任意로 參照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出題內容도 이에 대비하여 충분히 研究된 것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은 “能力”을 判定하는 하나의 手段에 대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필요한 “良識”的 評価는 어떻게 할것인가. “能力”은 있어도 “良識”이 없는 者가 물을 흐리며, 脱法의 侵害을 끼치는 것은 默過할 수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한 事前評価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은 쉽게 풀릴 수 없는 重要하고도 基本的인 研究課題의 하나이다.